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증인 등 조사 종결시각 설정〉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15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휘 · 박덕흠 · 박성민 · 구자근 · 백종헌 · 최은석
박성훈 · 권영세 · 서천호 · 임이자 · 배준영 · 강명구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 의안번호 : 36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증언 · 감정 · 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로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

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감정인·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함)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되, 증인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증인의 보호) ① ~ ④ (생략)	제9조(증인의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¹⁾에 따라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등

1)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은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2조²⁾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데,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 첨부)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³⁾이나, 증인등에 대한 신문 종결시각은 출석요구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님.

한편,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 ② 증인·참고인의 방송·보도 금지요청 또는 회의 비공개 요구, ③ 증인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⁴⁾ 증인등에 대한 신문 시간과 관련한 보호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2)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최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증인등에 대한 장시간 계속된 신문,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신문 등이 증인등에게 과도한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주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증인등에 대한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긴장 상태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대응하여야 하는 증인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요구로 출석한 증인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증인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인등의 보호와 국회의 안전심의 및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의원의 증인등에 대한 신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증인등에 대한 신문은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⁵⁾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해진 위원별 신문 시간 내에서 주신문·보충신문·재보충신문⁶⁾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사안의 중대성, 출석한 증인등의 수, 신문하는 위원 수 등에 따라서는 이러한 신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후 9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5) 소속 위원 정수가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이고, 소속 위원 정수가 가장 적은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명임.

6) 예를 들어, 주신문 7분, 보충신문 5분, 재보충신문 5분 등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신문 당일의 실제 회의 개의 시간이나 회의 운영 경과 또는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증인등에 대한 신문이 늦게 시작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 증인등의 조사를 마치도록 하면 위원의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거나 회의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회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참고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증인등에 대한 신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2023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후 9시를 넘어서 까지 진행되었음.

[표-2] 2023년도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상임위	감사일수	오후 9시 이후 종료일수	상임위	감사일수	오후 9시 이후 종료일수
운영위	2	1	문체위	7	-
법사위	10	6	농해수위	8	2
정무위	9	5	산자중기위	8	4
기재위	10	-	복지위	8	3
교육위	7	4	환노위	9	6
과방위	9	4	국토위	8	3
외통위	11	1	정보위	3	-
국방위	8	2	여가위	1	1
행안위	9	4			

둘째, 개정안은 증인들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조사 당일 오후 9시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의 연장 여부가 위원회의 의사정리권⁷⁾을 가진 위원장의 의사,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권을 가진 간사의 의사나 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의 의사가 배제된 채 오로지 출석의무 및 증언·진술의무를 부담하는 증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절차상 조사의 연장 여부를 증인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⁸⁾

셋째, 재판에 있어 증인의 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은 증인의 신문 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피의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의 조사 시간과 관련하여 ① 심야조사 제한, ② 장시간 조사 제한, ③ 휴식시

7)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8) 참고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제2항은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간 부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017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제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